#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57

발의연월일: 2025. 5. 20.

발 의 자:정성국·곽규택·서천호

김민전 · 김대식 · 한지아

김용태 · 김예지 · 백종헌

유용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급식의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 직무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사의 직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법률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환경에 대한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식생활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지도를 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양·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영양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제목 중 "안전관리"를 "식품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관리를"을 "식품 안전관리를"으로 한다.

제13조 중 "올바른"을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올바른"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양교
	사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단 작
	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
	<u>행한다.</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2조(위생・ <u>안전관리</u> ) ① 학교	제12조(위생・ <u>식품 안전관리</u> ) ①
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	
・검수・보관・세척・조리, 운	
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	
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	
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	
생과 <u>안전관리를</u> 철저히 하여	<u> 안전관리를</u>
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장은 <u>올바른</u> 식생활습관의 형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u>올바른</u>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	
를 제공한다.	